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재외동포기본법시행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박진<br>(외교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2호, 2023. 5. 9. 제정, 2023. 11. 10.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 1)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미리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3)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의 실시(안 제5조 및 제6조)

- 1) 「재외동포기본법」 제8조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립·작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공공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별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9. 4. ~ 10.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제3조(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체 및 관련 공공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공공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재외동포실무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 실적”이라고 한다)과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정책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고용노동부
10. 국무조정실
11. 재외동포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촉위원이 사임,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

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회의결과의 이행)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처 및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그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된 결과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공공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외동포협력센터) 법 제11조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계획과 필요한 출연금 내역을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그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재외동포, 재외동포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2.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재외동포정책의 안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재외동포에 관한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생활 여건·실태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정책의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외공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세계한인주간 기념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관련 문화·예술·체육·학술행사
2. 재외동포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의 경과조치)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첫 해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                  |
| 연 락 처         | (032) 585 - 3275 |